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의

Q 2019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2.2.14 이전에는 일당 0.025%의 요율, 그리고 그 이후에는 0.022%의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①'20.04.01~'22.02.13 → 0.025%, ②'22.02.14~'22.10. 신고일까지 → 0.022%

이 경우 ①, ②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될런지 아니면 전체 기간(20'4/1~신고일까지)에 대해 0.025%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A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4호, 2022.02.15)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크랩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결제내역 결제일자가 다를 경우 문의

Q 당사는 스크랩거래를 했고 스크랩매출자입니다.

9월 30일 공급가액 11,056,85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스크랩매입자측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12,162,534원을 입금하여 10월 11일에 송금하여 부가세는 국고에 귀속되고 공급가액만 입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입자측에서 송금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안하고 10월 11일로 하는 바람에 당사에서 3분기 기납부세액에서 조회가 안되고 4분기에서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스크랩거래에 대한 가산세가 매출자, 매입자 가산세가 발생하는 상황인지요?

A 공급받은 때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에 전용계좌 등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점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매입자측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귀사는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포워딩업체에서 관세 자체 환급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Q 당사는 중국에서 A거래처로부터 DDP 조건으로 수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어, 세관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불량대체품 발송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A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B포워딩업체에서 A거래처로 청구, B포워딩업체에서 당사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자체적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검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환급하는것이 타당한가요?

A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관세를 귀사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보전받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무형자산(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연수 적용

Q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얼마로 적용해야 하나요?(현재 4년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과 같이 5년을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4년을 적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A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용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아닌 비품으로 반영하므로 5년이 기준내용연수이나 4년 또는 6년도 가능합니다.